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56729		
등록번호	110111-2785355		
<b>상 호</b>	바이오플러스 주식회사 (Bio Plus Co., Ltd)	2019.08.30 변경	2019.09.09 등기
<b>본 점</b>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제18층 제에이-1801, 180 2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운스밸리2차)	. .	. .

<b>광고방법</b>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ioplus.biz)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
-------------	--	-----	-----

<b>1주의 금액</b>	금 500 원	. .	. .
---------------	---------	-----	-----

<b>발행할 주식의 총수</b>	50,000,000 주	. .	. .
-------------------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239,500 주		
보통주식	6,239,500 주		
	금 3,119,750,000 원	. .	. .

목 적
1. 생명공학 관련 제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2. 인체이식용 조직 관련 제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4.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5. 생물학적 제제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6. 의약품, 화장품 및 화장품의 원료, 기타 미용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7. 위 각호 및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용역업, 도소매업, 위수탁 가공업 8.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무역업 9. 품질 및 제품관련 국내 및 해외인증, 기술지도 관련 서비스업 1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정현규 5711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20, 102호(서초동, 상지리츠빌 서초5차)					
2013년 03월 31일	취임	2013년 04월 09일	등기		
2016년 03월 31일	중임	2016년 04월 01일	등기		
2019년 03월 31일	중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정현규 571115-*****					
2013년 03월 31일	취임	2013년 04월 09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56729				
2016년 03월 31일 중임	2016년 04월 01일 등기				
2019년 03월 31일 중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박성영 670113-*****					
2013년 03월 31일 취임	2013년 04월 09일 등기				
2016년 03월 31일 중임	2016년 04월 01일 등기				
2019년 03월 31일 중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감사 조용준 670111-*****					
2015년 10월 12일 취임	2015년 10월 16일 등기				
2018년 03월 30일 중임	2018년 04월 13일 등기				
사외이사 정길용 781120-*****					
2018년 03월 30일 취임	2018년 04월 13일 등기				
사내이사 이세윤 591129-*****					
2019년 03월 31일 취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이민엽 720112-*****					
2019년 03월 31일 취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의1

### 주 식 매 수 선 택 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제 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  
과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  
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9일 13시25분48초

